

제 273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 - 7834

1972. 8. 23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이 임무인...
 필리핀...
 서울특별시의...
 서울특별시의...

◎ 조 례

제 722 호 서울특별시미관지구내 건축조례중

개정조례 3

◎ 사 령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미관지구내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8월 22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722 호

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
건축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미관지구내 건축조례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
같이 한다.

1. 1종미관지구

도심부 및 이에 준하는 구역의 주
요한 도로의 주변구역

2. 2종미관지구

도심부에서 부도심 또는 위성도시로
연결되는 도로의 주변 및 이에 준하
는 구역

3. 3종미관지구

관광도로의 주변 및 도시미관상 필
요한 구역

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
이 한다.

가. 1종미관지구: 5층이상

2종미관지구: 3층이상

3종미관지구: 관광도로의 주변으로
서 도로면보다 낮은 구역의 건
축물의 높이는 노면보다 낮아야
하며 도로면 보다 높은 구역의
건축물의 높이는 조망 경관등을
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 령

◎ 1972. 8.21

법 무 과 지방행정사무관 조경운
(법제제장)

지방서기관에 추서함.

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이두행

성북구보건소

민원봉사실장에 보함.

농 정 과 지방수의원보 김형청

성북구보건소

과견근무를 해제함.

서울특별시장